

19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

의안 번호	12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1999. 4. 15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'99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의한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추가배정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가. 보증채무목적 :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지원

나. 보증채무내용

- 재 원 : 국민주택기금
- '99년도 보증채무 총액 : 800,000천원 (당초 400,000천원)
 - 기 보증채무금액 : 400,000천원 (제73회 사하구의회 의결)
 - 추가 보증채무금액 : 400,000천원 ('99년도 추가 배정분)
- 보증기관 :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
- 피보증기관 : 한국주택은행 서부산지역 본부장
- 보증기간 : 한국주택은행의 채권변제 완료시까지

다. 융자조건

- 융자한도액 및 이율 : 가구당 750만원 이하, 연리 3%
- 융자 기간 : '99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대출기간
- 상환 기간 : 2년만기 일시상환
(단,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)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및 제3항
-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